

수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53684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변경 전 성명 : E)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피고는 207,6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2,624,879 원 및 그 중 51,516,772원에 대하여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6. 16.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체시 이율 19.9%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207,6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약정한 리스로 지급을 지체하였고, 2024. 3. 22. 기준으로 소외회사의 월 렌트로, 이자 등 채무는 합계 151,648,172원(원금 144,297,386원, 이자 5,002,764원, 연체료 2,190,637원, 법비용 157,385원)이었으나, 그 이전인 2024. 3. 20.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되면서 그 차량가액 상당이 반환일 기준 소외회사의 채무에 변제충당되어 2024. 6. 27. 기준으로 소외회사의 채무는 원금 51,516,772원, 2024. 6. 27.까지 새롭게 발생한 연체료 1,108,107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증한도 207,6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잔여 원금과 연체료의 합계 52,624,879원 및 그 중 원금 51,516,7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반납되어 이 사건 약정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대물변제, 변제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미 차량반납에 따라 총당되고 남은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고의 자인하는 금원을 넘어서서 대물변제 또는 변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차량이 반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을 권리남용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